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15

발의연월일: 2024. 9. 20.

발 의 자: 송언석 • 박준태 • 신성범

이종배 • 정동만 • 고동진

임이자 • 유영하 • 김종양

최은석 • 박대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(이하 "오도문구")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어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경시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를 담배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대마초향 등 마약류 명칭을 이용한 담배 광고가 등장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고 마약을 단순 기호식품 정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오도문구뿐만 아니라 마약류 및 유사 용어 등에 대한 사용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마약류의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용어, 문구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(안 제25조의6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6(담배에 대한 마약류문구등 사용제한) ① 제조업자 및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·용어·문구·상 표·형상 또는 그 밖의 표시(이하 "마약류문구등"이라 한다)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마약류문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마약류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, 판매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5조의6(담배에 대한 마약류문
	구등 사용제한) ① 제조업자
	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포
	장이나 광고에 「마약류 관리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	따른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
	명칭 • 용어 • 문구 • 상표 • 형상
	또는 그 밖의 표시(이하 "마약
	류문구등"이라 한다)를 사용하
	<u>여서는 아니 된다.</u>
	② 마약류문구등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
제2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27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	
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	
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제25조의6을 위반하여 마약
	류문구등을 표시한 담배를 제
	조 또는 수입, 판매한 자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